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0. 19 선고 2022가단545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21. 10.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9,487,2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15. ‘B는 원고에게 32,359,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59645호) 2018. 2.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B의 아버지인 망 C이 2021. 10. 6.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가 있다.

다. 망 C의 상속인들은 2021. 10. 6.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안성시 E아파트 F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중 망 C의 1/2 지분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라. B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였다.

마.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2021. 1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9. 9. 19, 채무자 망 C,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8,589,464원이다(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기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안성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 C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망 C의 병원비,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으며 망 C이 B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가 선의라고 주장한다(피고는, 답변서에서 그 주장내용의 법률적 의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2022. 9. 7.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그 제출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진행된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음에도 그 법률적 의미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주장내용을 위와 같이 선택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B와 피고의 관계(피고가 B의 새어머니이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내용과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수익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법률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또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가능함에도 가액배상만을 구하고 있는 경우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는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21. 12. 6. 이 사건 분할협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망 C에서 피고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나 사해행위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8.경 기준 9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이 28,589,464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 95,000,000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피담보채무액 28,589,464원을 공제한 나머지 66,410,546원(= 95,000,000원 - 28,589,464원) 중 B의 상속분 $1/7$ (= $1/2$ 지분 $\times$ $2/7$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9,487,219원(= 66,410,546원 $\times$ $1/7$, 원 미만 버림)이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중 B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액과 B의 상속가액 9,487,219원 중 적은 금원인 9,487,21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경환